

문서번호 (결재일자)	마케팅팀-16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선임	마케팅팀장	DDP운영본부장	대표이사
06/16 조혜림	06/19 박내선	06/21 박진배	06/23 이경돈
협 조	선임	06/16 김재학	디자인행정관 06/22 한문철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DDP 대관 규정』 일부 개정(안) 이사회 수정가결 반영 수정

2023. 6.

DDP운영본부
(마케팅팀)

『DDP 대관 규정』 일부 개정(안) 이사회 수정가결 반영 수정

DDP 대관 규정 일부 개정안이 제76차 임시이사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이사회 수정안을 검토, 일부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함.

I 제안이유

- 2022년 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
- 대관 가동률 제고를 위한 문구 신설 및 기타 문구 수정

II 주요 내용

- 대관료 정의 및 대관료 감경기준 수정

○ 관련 조항: 제9조, 별표1, 별표2

- 개정사유: 2022년 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
- 개정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맞게 대관료 정의 및 감경기준 수정
- 참고사항: 2022년 기관운영 종합감사 지적사항

가. 대관시설 사용료(대관료) 산출 부적정

- 「DDP 대관규정」 제9조 제1항의 대관료 산출방식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관료를 시설유지비·감가상각비·인건비 등 원가 요인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한다고 하였음
- 이러한 재단의 대관시설 사용료 산출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¹⁾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²⁾,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1항³⁾ 및 제29조⁴⁾ 위반에 해당

¹⁾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²⁾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중략) 1.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중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후략)

³⁾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후략)

⁴⁾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후략)

기 준	현 행(개선필요)
재산평정가격 * 요율(1,000분의 50 이상) - 재산평정가격=건물가액+부지가액 · 건물가액: 건물면적*시가표준액 · 부지가액: 부지면적*개별공시지가	시설유지비·감가상각비·인건비 등 원가 요인 고려, 시장적용가 비교 또는 감정평가(임대사례비교법) 방식으로 재단이 정하여 대관료 산출

나. 대관시설 사용료(대관료) 감경 부적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⁵⁾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⁶⁾에 따라 사용료 감면 및 감경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지 않고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사용료 감면 및 감경은 적정하지 않음

(중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지 않음**
 <행정안전부 유권해석(2010.12.7.)>

- 재단 「DDP 대관규정」[별표 1] 5-2 대관료 감경기준은 **법령에 근거 없음**

기 준	현 행(개선필요)		
	항목	내용	할인율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 으로 사용하는 경우 - 행정재산을 기부한 기부자 등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재난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① 공공기관 주최	공공기관의 단독 주최, 공익 목적(공공성)의 행사	10%
	② 서울특별시 주최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공사·공단 등의 단독 주최 행사	20%
	③ 특별유치	유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행사·전시	10%
	④ 공실적용	이미 다른 행사·전시가 있는 경우 대관하려는 장소의 사용료(대관료)적용하여 공실이 예상되는 장소 사용	-

⁵⁾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 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⁶⁾ 제17조(사용료 감면) (중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후략)

□ 수시대관 문구 수정

○ 관련 조항: 제5조

- 개정사유: 수시대관의 정의를 확대하여 DDP 공간 활성화 및 대관 가동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개정내용: 행사의 중요도나 DDP 기여도가 상당한 행사의 경우 개최일과 상관없이 수시대관 접수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 대관료 미납에 따른 대관 취소 문구 보완

○ 관련 조항: 제11조

- 개정사유: 대관료 미납 시 재단이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문구 명확화
- 개정내용: 선금과 잔금에 한정된 대관료 미납 취소 요건을 대관료 전체로 수정

□ 기타 문구 수정

○ 관련 조항: 제1조, 제3조, 별지 제4호 서식

- 개정사유: 용어 및 조항 위계에 따른 표현 수정
- 개정내용: 재단 공식 명칭 수정, 조항 간 용어 표현 방식 수정

III 이사회 수정가결 내용 및 검토 결과

□ 수정가결 내용: 제9조(대관료) ①항 서술방식 수정

- 규정 개정 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문장 정비 원칙에 따라 목적어와 서술어가 잘 어울리도록 표현 방식을 수정함.

원 안	개정안
제9조(대관료) ① 대관료와 대관료 감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대관료) ① 대관료와 대관료 감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IV

행정사항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절 차: 이사회 의결 후 서울시장 승인
- 시 행 일: 시장 승인일

별지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DDP 대관 규정 전문(이사회 수정가결 반영) 1부. 끝.

신 . 구조문 대비표

[DDP 대관 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u>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u>이 운영하는 <u>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 이라 한다))</u>의 대관 및 대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정의) (생 략)</p> <p>1. (생 략)</p> <p>2. “대관 신청자”란 전시·행사·교육·회의 등(이하 “전시”라 한다)을 위해 <u>DDP</u>의 대관을 신청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을 말하며,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민법」 제114조에 어긋나지 않는 대리행위의 효력을 갖춘 주최 및 주관자의 대행사를 포함한다.</p> <p>3. “대관자”란 제11조에 따라 <u>재단</u>으로부터 대관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4. (생 략)</p>	<p>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u>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u> 운영하는 <u>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u> 대관 및 대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대관 신청자”란 전시·행사·교육·회의 등(이하 “전시”라 한다)을 위해 <u>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DDP” 이라 한다)</u>의 대관을 신청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을 말하며,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민법」 제114조에 어긋나지 않는 대리행위의 효력을 갖춘 주최 및 주관자의 대행사를 포함한다.</p> <p>3. “대관자”란 제11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u>으로부터 대관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5. (생 략)</p> <p>제5조(대관의 종류) 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잔여일 정 발생 시 <u>신청을 받아</u>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p> <p>④ (생 략)</p> <p>제9조(대관료) ① <u>대관료는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원가 요인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한다.</u></p> <p>② (생 략)</p> <p>③ <u>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1. <u>재단이 직접 운영하거나 협력하여 참여하는 행사·전시의 경우</u></p> <p>제11조(대관료 납부 등)</p> <p>① <u>선금은</u> 재단이 정한 기간 내(대관 허가서 기준)에 지정한 입금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u>선금을</u>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 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다만, 대관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은 대관자로부터 납입 기일을 명시한 대관자 대표의 확</p>	<p>5. (현행과 같음)</p> <p>제5조(대관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잔여일 <u>정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단의 대표이사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u>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대관료) ① <u>대관료와 대관료 감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삭제</u></p> <p>1. <u>삭제</u></p> <p>제11조(대관료 납부 등)</p> <p>① <u>대관료는</u> 재단이 정한 기간 내(대관 허가서 기준)에 지정한 입금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u>대관료를</u>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 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다만, 대관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은 대관자로부터 납입 기일을 명시한 대관자 대표</p>

현 행	개 정 안
<p>인 서류를 제출받아 납입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③ 잔금은 대관 시설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u>이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단은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대관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은 대관자로부터 납입 기일을 명시한 대관자 대표의 확인 서류를 제출받아 납입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u></p> <p>④~⑦ (생 략)</p>	<p>의 확인 서류를 제출받아 납입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잔금은 대관 시설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p> <p>④~⑦ (현행과 같음)</p>

■ DDP 대관 규정 [별표 1]

DDP 대관료

1. ~ 4. (생략)

5. 운영기준

5-1. 운영시간 (생략)

5-2. 대관료 감경기준

항목	내용	할인율
① 공공기관 주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의 단독 주최, 앞서 설명한 기관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되는 공익 목적(공공성)의 행사는 해당 기관의 추천공문과 협의에 따라 대관료를 할인율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10%
② 서울특별시 주최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공사·공단의 단독 주최 행사는 할인율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20%
③ 특별유치	특별히 재단이 유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행사·전시의 경우 할인율 범위 안에서 특별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0%
④ 공실적용	대관자가 대관하려는 일자와 장소에 이미 다른 행사·전시가 있는 경우 대관하려는 장소의 사용료(대관료)를 적용하여 공실이 예상되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

5-3. 기타 사항

- 아트홀 기준시간 이외 사용 시 대관료는 시간당 단가의 150% 적용할 수 있다.
- 대관 사용 중 추가 계약(연장)은 행사·전시 종료 이후 정산할 수 있다.
- 부속시설은 단독대관 불가를 원칙으로 하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결정하여 대관할 수 있다.
- 뮤지엄 및 갤러리문(전시전용관)은 모든 감경의 적용을 제외한다.
- 요율제를 제외한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 전시전용관은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의 전시만을 사용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무역 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 등 미술 자료의 전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잔디언덕은 대관료와 별도로 잔디 보수·손상 비용을 재단이 정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다.
- DDP 공간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별표 1~2>에 명시된 시설 외에 DDP 내 일부 구역을 단기 대관으로 운영할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 대관 공간 범위·대관료 등을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여 재단 및 DDP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 정 안

■ DDP 대관 규정 [별표 1]

DDP 대관료

1. ~ 4. (현행과 같음)

5. 운영기준

5-1. 운영시간 (현행과 같음)

5-2. 대관료 감경기준 삭제

5-3. 기타 사항

- 아트홀 기준시간 이외 사용 시 대관료는 시간당 단가의 150% 적용 할 수 있다.
- 대관 사용 중 추가 계약(연장)은 행사 전시 종료 이후 정산할 수 있다.
- 부속시설은 단독대관 불가를 원칙으로 하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결정하여 대관할 수 있다.
-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일반 대관료의 0.8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일반 대관료의 0.9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뮤지엄 및 갤러리문(전시전용관)은 모든 감경의 적용을 제외한다.
- 요율제를 제외한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 전시전용관은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의 전시만을 사용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무역 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 등 미술 자료의 전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잔디언덕은 대관료와 별도로 잔디 보수·손상 비용을 재단이 정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다.
- DDP 공간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별표 1~2>에 명시된 시설 외에 DDP 내 일부 구역을 단기 대관으로 운영할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 대관 공간 범위·대관료 등을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여 재단 및 DDP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DDP 대관 규정 [별표 2]

디자인랩 대관 운영

1. 디자인랩 대관료

1-1. 디자인랩 1층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대관 시설명		면적(㎡)	1일 기준
시민라운지	1층 전체	1,789	9,187,200
	라운지 A	330	1,694,676
	단위 사용 구간	60	308,100

※ 디자인랩 1층은 시민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운영되는 라운지 공간임.

1-2. 디자인랩 2층~4층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대관 시설명		면적(㎡)	시간당 단가	3시간 기준	1일 기준
2층	복세미나실	155	67,150	201,450	738,650
	오픈라운지	456	228,650	685,950	2,515,150
	데크라운지	267	86,700	260,100	953,700
	회의실1	51	25,500	76,500	280,500
	회의실2	52	25,500	76,500	280,500
	회의실3	54	26,350	79,050	289,850
	회의실5	12	15,770	47,310	173,470
	회의실6	10	14,030	42,090	154,330
	회의실7	11	14,340	43,020	157,740
	화상스튜디오	378.22	241,000	723,000	2,651,000
	화상회의실	114.18	73,000	219,000	803,000
3층	디자인홀	627.6	296,000	888,000	3,256,000
	디자인쇼룸	416	114,500	343,500	1,259,500
4층	잔디사랑방	570	271,660	814,980	2,988,260

※ 디자인랩은 최소 3시간부터 대관 가능. 이후 1시간 단위 추가 가능.

개정안

■ DDP 대관 규정 [별표 2]

디자인랩 대관 운영

1. 디자인랩 대관료

1-1. 디자인랩 1층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대관 시설명		면적(㎡)	1일 기준
시민라운지	1층 전체	1,789	9,187,200
	라운지 A	330	1,694,676
	단위 사용 구간	60	308,100

- ※ 디자인랩 1층은 시민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운영되는 라운지 공간임.
- ※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일반 대관료의 0.8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일반 대관료의 0.9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1-2. 디자인랩 2층~4층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대관 시설명		면적(㎡)	시간당 단가	3시간 기준	1일 기준
2층	복세미나실	155	67,150	201,450	738,650
	오픈라운지	456	228,650	685,950	2,515,150
	데크라운지	267	86,700	260,100	953,700
	회의실1	51	25,500	76,500	280,500
	회의실2	52	25,500	76,500	280,500
	회의실3	54	26,350	79,050	289,850
	회의실5	12	15,770	47,310	173,470
	회의실6	10	14,030	42,090	154,330
	회의실7	11	14,340	43,020	157,740
	화상스튜디오	378.22	241,000	723,000	2,651,000
	화상회의실	114.18	73,000	219,000	803,000
3층	디자인홀	627.6	296,000	888,000	3,256,000
	디자인쇼룸	416	114,500	343,500	1,259,500
4층	잔디사랑방	570	271,660	814,980	2,988,260

- ※ 디자인랩은 최소 3시간부터 대관 가능. 이후 1시간 단위 추가 가능.
- ※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일반 대관료의 0.8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일반 대관료의 0.9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디자인랩 대관 운영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대관주체	(생략)	
내부대관	(생략)	
외부대관 - 콘텐츠 심의	(생략)	
공동주최	(생략)	
할인	서울시 주최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공사·공단의 단독 주최 행사는 20%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 할인	정부, 정부 출연기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등 대상으로 10%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특별할인 적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투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대상임
결제	(생략)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	(생략)	
하자보수	(생략)	
지정업체	(생략)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DDP 대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

2. 디자인랩 대관 운영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대관주체	(현행과 같음)
내부대관	(현행과 같음)
외부대관 - 콘텐츠 심의	(현행과 같음)
공동주최	(현행과 같음)
삭제	
결제	(현행과 같음)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	(현행과 같음)
하자보수	(현행과 같음)
지정업체	(현행과 같음)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DDP 대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DDP 대관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1. 7.>

DDP 디자인랩 대관 허가승인서

가. 신청자(대관자)

단체(개인)명		대표자명	
단체(개인)주소		담당자명/직함	
		연락처	
사업자등록증번호		이메일	

나. 행사·전시 개요

행사·전시명			
주최		주관	
대관시설			
대관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시간)		
	※ 설치 및 철거일정, 각 공간별 일정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내용			

다. 대관료·예치금

성격	금액	납부기한	기타사항
대관료	원	년 월 일	
(추가)대관료	원	년 월 일	
총액	원		입금 계좌번호 작성
원상복구예치금	원	년 월 일	입금 계좌번호 작성

※ 원상복구예치금은 대관료와 별도이며, 행사·전시 종료 이후 시설의 파손이 없으면 반환됩니다.

라. 준수사항

1. 대관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대관료를 지정된 상기 계좌에 납부 또는 현장 결제하여야 합니다. 대관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입금(결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DDP 대관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 대관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허가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DDP 대관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3. 붙임 파일 : 견적서 1부, DDP 대관 규정 1부. 끝.

귀하께서 제출하신 DDP 대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개정안

■ DDP 대관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1. 7.>

DDP 디자인랩 대관 허가서

가. 신청자(대관자)

단체(개인)명		대표자명	
단체(개인)주소		담당자명/직함	
		연락처	
사업자등록증번호		이메일	

나. 행사·전시 개요

행사·전시명			
주최		주관	
대관시설			
대관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시간) ※ 설치 및 철거일정, 각 공간별 일정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내용			

다. 대관료·예치금

성격	금액	납부기한	기타사항
대관료	원	년 월 일	
(추가)대관료	원	년 월 일	
총액	원		입금 계좌번호 작성
원상복구예치금	원	년 월 일	입금 계좌번호 작성

※ 원상복구예치금은 대관료와 별도로이며, 행사·전시 종료 이후 시설의 파손이 없으면 반환됩니다.

라. 준수사항

1. 대관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대관료를 지정된 상기 계좌에 납부 또는 현장 결제하여야 합니다. 대관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입금(결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DDP 대관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 대관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허가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DDP 대관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3. 붙임 파일 : 견적서 1부, DDP 대관 규정 1부. 끝.

귀하께서 제출하신 DDP 대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